

제25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 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 
관한 조례안  
(기획경제국 일자리청년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  
전문위원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628호
- 나. 제출자 : 고영찬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4. 11. 12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11. 12.

## 2. 제안이유

「청년기본법」 제24조의6 ‘청년친화도시’ 조항의 신설에 따라 우리 구의 지역 청년들의 역량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5조 및 제6조)
- 라.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(안 제7조)
- 마. 정책연구 및 비용 등 지원(안 제8조 및 제9조)
- 바. 관련기관·단체와의 협력, 교육 및 홍보(안 제10조 및 제11조)

#### 4. 관계법령

- 「청년기본법」 제24조의 6
- 「청년기본법 시행령」 제21조의8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청년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, 청년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
- 동 제정안은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
  - 안 제1조에서는 본 제정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,
  - 안 제2조에서는 청년, 청년친화도시, 청년정책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
  - 안 제3조에서는 ‘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, 청년 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·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’ 라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,
  -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내용에 대하여
  - 안 제6조에서는 안 제5조에 기초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하여
  - 안 제7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친화도시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
  - 안 제8조에서는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에 대하여

- 안 제9조에서는 각종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등 지원에 대하여
  - 안 제10조에서는 관련 기관·단체와의 협력에 대하여
  - 안 제11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관련 교육과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- 청년친화도시 관련 법령 개정현황을 살펴보면, 최근 「청년 기본법」 개정(2023.3.21.개정, 2023.9.22.시행)으로 24조의6<sup>1)</sup>(청년친화도시) 조항이 신설되었고
  - 참고로 서울시와 성북구 및 노원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.
  - 2024. 8. 23(금) 국무조정실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, 청년 발전,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‘청년친화도시’로 지정·지원하기 위해 첫 번째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“2024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”을 공고하였음.
  - 청년친화도시는 「청년기본법」 제24조의6에 근거하여, 청년친화적 도시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행·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며,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며, 지정단위는 특별자치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임.

---

1) 제24조의6(청년친화도시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, 청년발전,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(이하 이 조에서 “청년친화도시”라 한다)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기준·절차,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3. 3. 21.]

- 청년친화도시는 2024년부터 매년 3~5개 지역을 지정하여 2028년까지 25개 내외 지역을 지정할 계획임.
- 이번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」은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, 청년친화도 평가, 제도 개선 등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함께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며,
-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## 청년기본법

[시행 2023. 9. 22.] [법률 제19253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
**제24조의6(청년친화도시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  
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, 청년발전,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  
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(이하 이 조에서 “청년친화도  
시”라 한다)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를 청년친  
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기준·절차,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 
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3. 3. 21.]

## 청년기본법 시행령

[시행 2023. 9. 22.] [대통령령 제33720호, 2023. 9. 12., 일부개정]

**제21조의8(청년친화도시의 지정)** ① 법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청년친화  
도시(이하 “청년친화도시”라 한다)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
2.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
3. 청년참여, 청년발전, 청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과 관련한  
업무 실적이 있을 것
4. 그 밖에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 
하는 기준을 갖춘 것

② 법 제24조의6제2항에 따라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
2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서류
  - 가.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
  - 나.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
  - 다.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의 권익 증진 방안

③ 국무총리는 법 제24조의6제2항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.

④ 청년친화도시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3. 9. 12.]